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38
----------	-----

2020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호대 의원 외 11명
- 나. 제안일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호대 의원)

### 가. 제안이유

-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현행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 이자지원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이 졸업 후 최대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비용

##### 나. 전제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은 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유사한 경기도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
  - 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규모는 ‘09년~’ 16년 기간 중 서울시가 594,390명, 2,508,438백만원이었으며, 경기도는 586,469명, 2,313,209백만원이었음
- 추계기간 동안 금리, 지원 대상자,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라. 방법

- 경기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근거로 추계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923,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584,600	584,600	584,600	584,600	584,600	2,923,000
	소계(b)	584,600	584,600	584,600	584,600	584,600	2,923,000
□ 총 비용(b-a)		584,600	584,600	584,600	584,600	584,600	2,923,000

####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 입법예고(2019. 8. 19. ~ 8. 26.)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대학생)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 졸업한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확대된바, 지원대상도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 ※ 본 개정안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 수정(삭제)된 부분을 포함하여 다시 발의된 안건임.
- 2019년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11,367명에게 총 10억 4천 3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인원	지원액
2019년	11,367	1,058
2018년	17,910	1,513
2017년	16,947	1,414
2016년	14,356	1,143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지원규모	예산액	집행률%	지원실적		비고
				인원	지원액	
2020년 (지원계획)	30,054	1,260	49%	5,931	621	'20.7 기준
2019년	51,679건	1,732	61%	11,367	1,058	
2018년	75,917건	1,724	88%	17,910	1,513	
2017년	69,802건	1,424	99%	16,947	1,414	
2016년	55,584건	1,174	97%	14,356	1,143	
2015년	24,937건	620	98%	6,585	610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대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 청년
- 지원기간 : 대학 재학 및 졸업 후 5년(휴학 6학기 포함)
- 지원이자 :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이자

구 분		지원범위
다자녀 가구		전액지원
일반 상환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이자상환 발생시점

- 일반 상환학자금 : 대출시점부터 이자상환 의무 발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 원금, 이자 모두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 유예

### 가. 이자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1조 ~ 안 제3조)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인 “서울지역 대학생”에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하고,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2년→5년)하려는 것임.
- 이는 장기화된 청년 실업 등의 대안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지역 <u>대학생</u>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대학생 및 대학원생</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u>대학(교)</u>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u>2년</u>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대학교 및 대학원</u>----- ----- <u>5년</u>----- -----.</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차지원) ① <u>대학생 학자금대출</u> 이차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차지원) ① <u>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u> ----- ----- -----.</p>

○ 17개 시·도의 대학생 학자금 이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시·도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차를 지원하고 있고, 대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고등교육기관<sup>1)</sup>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을 포함)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명시적으로 대학원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중만)와 경기도이며, 경기도는 2018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원생에게도 소득수준이나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 현황〉

연번	구분	관련 조례	비고
1	서울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u>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u> 을 말한다.	안 제2조제3호
2	경기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다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u> 을 말한다. "졸업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 과정을 마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4항
3	경남	"대학생"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u> 이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학생(대학원생 제외)</u> 을 말한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4	경북	"대학생"이란 제2조제1호의 <u>학자금 대출을 받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미취업 졸업생</u> 으로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5	광주	" <u>광주 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u> "이란 광주광역시 소재 <u>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중 학생</u> 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6	대전	"대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소재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중인 학생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녀로서 대전광역시 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2조 제2항
7	부산	"부산지역 대학생"이란 <u>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u> 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2조 제3항

연번	구분	관련 조례	비고
8	울산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9	인천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10	전남	“전라남도 지역 대학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나 다른 시·도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도에 주소를 두고, 도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11	전북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u> 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12	제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u>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을 포함한다), 종퇴 또는 자퇴한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u>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 2. 제주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13	충북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u> 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 최근 학자금 대출 규모 및 대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체납액<sup>2)</sup> 및 미상환율<sup>3)</sup>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 대학원생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지역 청년의 대학원 진학률<sup>4)</sup>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용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 소요 재원\* 및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자 및 대학 졸업후 취업자가 소외되고 배제되거나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비용추계에 따르면 5년간 2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584,600	584,600	584,600	584,600	584,600	2,923,000
	소계(b)	584,600	584,600	584,600	584,600	584,600	2,923,000
□ 총 비용(b-a)		584,600	584,600	584,600	584,600	584,600	2,923,000

※ 한편,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대상<sup>5)</sup>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진행(2019년 4월 12일)한바 있음.

2) 한국정경신문(2018.11.12.), 학자금대출 못 갚는 청년 '비상'..'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율 3년만에 증가  
한국경제뉴스(2019.10.10.)학자금 빌려놓고 못 갚는 청년 3.1만명...체납액 368억원

3) 한겨레(2019.10.10.), '빛이 빛을 부른다'...학자금대출 체납자 1만7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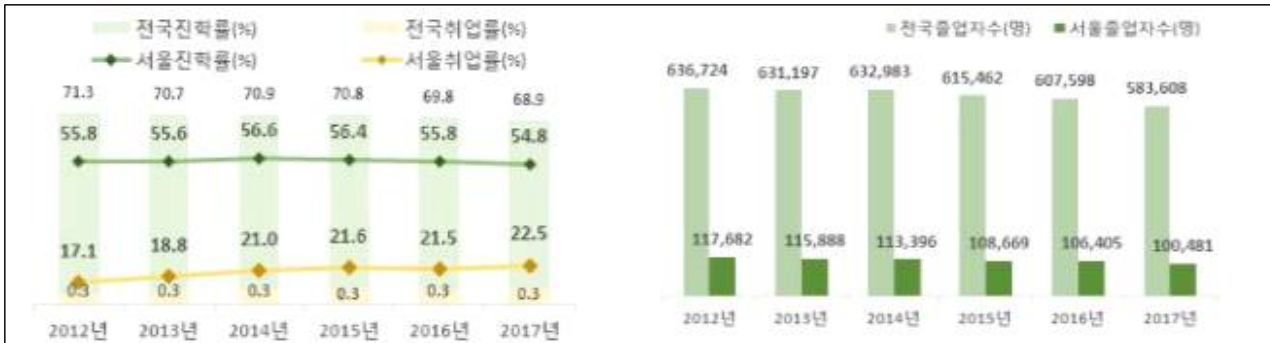
4) 진학률은 9.5%(진학자는 국내전문대학, 국내대학, 국내대학원, 국외전문대학, 국외대학, 국외대학원 진학자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 진학률만은 더 작은 수치일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청년 통계 :서울시 청년인구(2,319명, 19-34세 기준), 경인지방통계청, 2018년 12월

5)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



##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률과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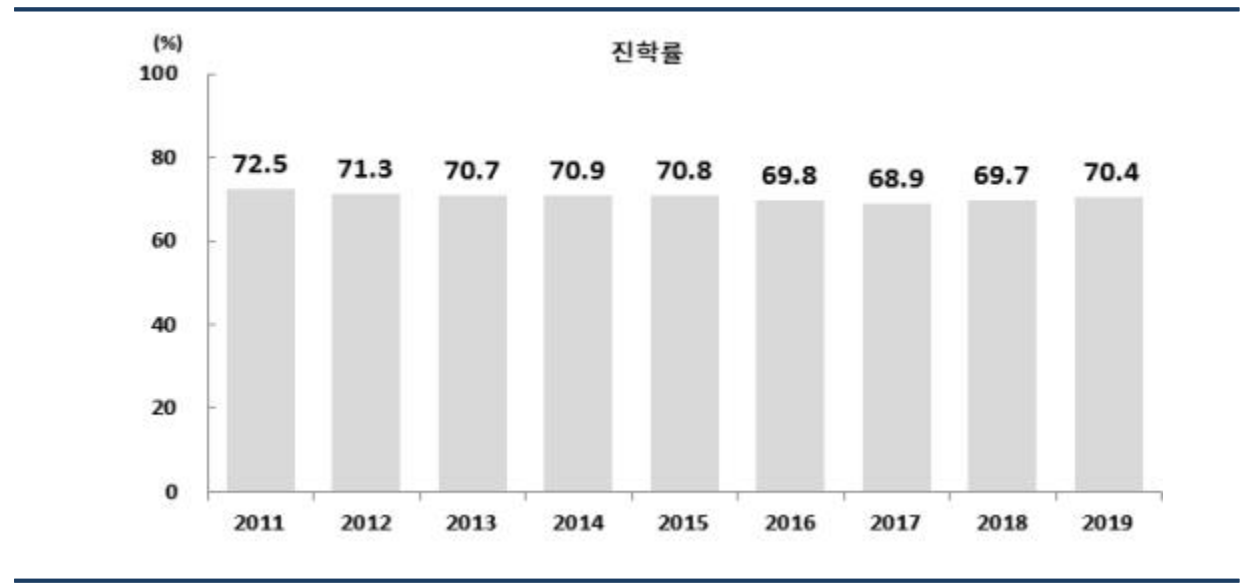
□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 2017년 서울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54.8%, 취업률은 22.5%임**

- 2017년 서울시 고등학교 졸업자 100,481명 중 진학자는 55,081명이며, 취업자는 10,185명임.

□ '19년 고등학교의 졸업자 수는 **568,736명으로 전년(566,545명) 대비 2,191명 증가**

○ 진학자 수는 400,218명으로 전년(394,923명) 대비 5,295명(1.3% ↑) 증가하였고, 진학률은 70.4%로 전년(69.7%) 대비 0.7%p 상승



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표 15 ■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기타	
		학생 수	진학률	학생 수	취업률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19년	568,736	400,218	70.4	41,660	24.9	1,461	0.3	125,397	22.0
'18년	566,545	394,923	69.7	52,359	30.7	1,047	0.2	118,216	20.9
'17년	583,608	401,923	68.9	62,784	34.7	927	0.2	117,974	20.2
'16년	607,598	423,997	69.8	61,882	33.9	1,152	0.2	120,567	19.8
'15년	615,462	435,650	70.8	61,370	34.3	972	0.2	117,470	19.1
'14년	632,983	448,817	70.9	61,268	33.5	1,203	0.2	121,695	19.2
'13년	631,197	446,474	70.7	55,443	30.2	1,389	0.2	127,891	20.3
'12년	636,724	453,899	71.3	53,060	29.3	1,573	0.2	128,192	20.1
'11년	648,468	469,961	72.5	41,057	23.3	1,940	0.3	135,510	20.9

주 1) 진학률(%) = 진학자 수 / 졸업자 수

2)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입대자 수)

3) 입대자 비율(%) = 입대자 수 / 졸업자 수, 기타 비율(%) = 기타 학생 수 / 졸업자 수

4) 진학자는 국내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국외 진학자를 포함

5) 졸업자는 2월 졸업자 기준이며, 졸업 후 상황(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기타)은 4월 1일 기준임

6) 기타에는 무직자 및 미상, 특수학교 전공과가 포함됨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취업률과 진학률〉



□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상황

○ 2016년 서울시 대학 및 대학원(이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수는 123,439명으로, 이 중 취업자수는 71,447명이고 진학자수는 11,749명임.

- 2016년 서울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68.1%**이며 진학률은 **9.5%**임.

□ '19년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자 수는 **733,517명**으로 전년(734,291명) 대비 774명(0.1% ↓) 감소

○ 일반대학은 343,248명으로 전년(342,841명) 대비 407명(0.1% ↑) 증가, 교육대학은 3,870명으로 전년(3,866명) 대비 4명(0.1% ↑) 증가

○ 전문대학은 197,897명으로 전년(198,110명) 대비 213명(0.1% ↓) 감소, 기타는 64,580명으로 전년(65,769명) 대비 1,189명(1.8% ↓) 감소

○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은 123,922명으로 전년(123,705명) 대비 217명(0.2% ↑)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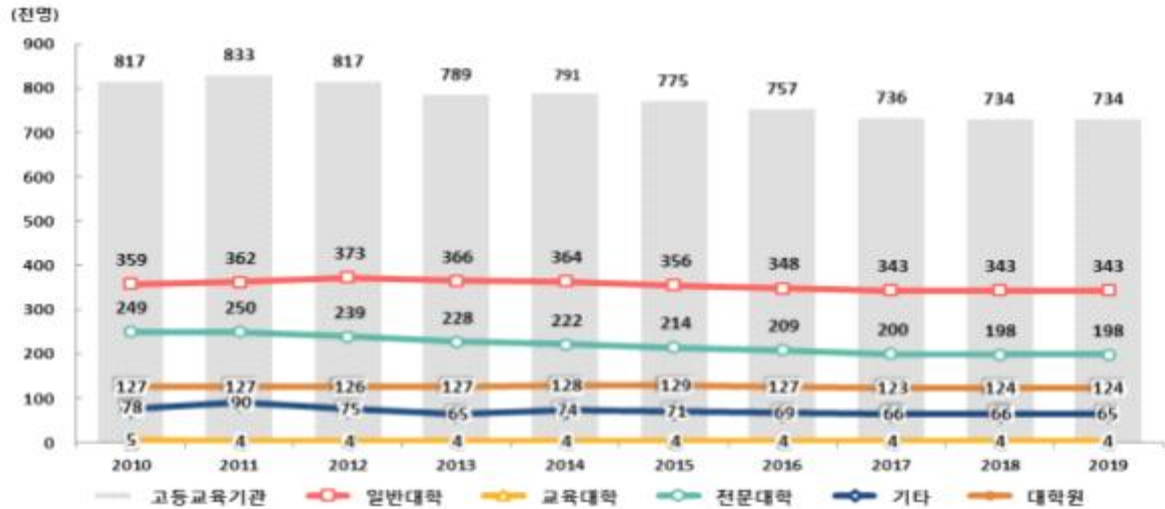


표 20 |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

(단위 : 명)

연도	고등교육기관	학부				대학원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타	
'19년	733,517	343,248	3,870	197,897	64,580	123,922
'18년	734,291	342,841	3,866	198,110	65,769	123,705
'17년	735,581	343,076	3,863	200,021	65,701	122,920
'16년	756,527	348,393	3,849	208,808	68,505	126,972
'15년	774,611	355,772	3,850	214,466	71,322	129,201
'14년	791,242	363,655	3,868	221,750	74,212	127,757
'13년	788,994	365,515	3,892	227,707	65,020	126,860
'12년	817,142	372,941	3,923	238,952	75,210	126,116
'11년	832,631	361,686	4,395	249,693	89,985	126,872
'10년	817,225	358,511	4,862	249,144	77,750	126,958
'00년	819,779	321,399	5,075	318,135	81,091	94,079

- 주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이 포함됨
- 2) 기타에는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이 포함됨
- 3) 대학원에는 대학부설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 4) 입학자 수에는 정원내/외 입학자가 모두 포함됨
- 5) 입학자는 당해연도 3월 입학자(신입생) 기준임. 단, 대학원 입학자는 전년도 9월과 당해 연도 3월 입학자 기준임

※ 서울시 청년 통계(2018, 경인지방통계청), 2019년 교육기본통계(교육부)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38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호대, 김종무, 강동길,  
김 경, 김상훈, 전병주,  
박순규, 김정태, 이정인,  
권영희, 김화숙, 김소양 의원 (12명)

## 1. 제안이유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현행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이 졸업 후 최대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학생들”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학(교)”을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지역 <u>대 학생들에게</u>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u>대학(교)</u>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u>2년</u>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u>대 학생 학자금대출</u> 이자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대 학생 및 대학원생들</u>-----</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 <u>대학교 및 대학원</u>-----</p> <p>-----<u>5년</u>-----</p> <p>-----</p> <p>-----</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u>대 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u> --</p> <p>-----</p> <p>-----</p> <p>-----</p> <p>-----</p> <p>-----</p>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비용

### 2. 세부추계내역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비용
  - 총비용 ≙ 2,923,000천원
  - 연간비용 ≙ 584,600천원(2020년) = 이자지원 대학원생수 × 1인당 이자비용  
= 3,160명 × 185천원
- ※ 장학재단 대출규모가 유사한 경기도 사례 준용

### 【참고1】 경기도 사례(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3895(2018.11.19.)호)
- 2019년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인한 증가액 : 584백만원
    - 지원인원 : 3,160명
    - 지원금액 : 1인당 185천원
  -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잔액 중 신청률 5.4%로 계산(2014~2018년)

### 【참고2】 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현황(주민등록지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누적('09년~'16년)		
		합계	1학기	2학기
전국	금액	8,554,731	3,940,684	4,614,047
	인원	2,276,435	1,019,892	1,256,543
서울	금액	2,508,438	1,160,984	1,347,453
	인원	594,390	267,296	327,094
경기도	금액	2,313,209	1,080,955	1,232,254
	인원	586,469	266,068	320,401